교직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2001.03.01.제정 2003.05.01.일부개정 2005.11.28.일부개정 2008.11.01.일부개정
2012.03.20.일부개정 2012.12.01.일부개정 2015.03.01.일부개정 2020.03.27.일부개정
2020.06.26.일부개정 2022.02.07.일부개정 2022.08.24.일부개정 2023.04.07.일부개정
2025.11.01.일부개정

<재정혁신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45조의2 및 제8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동명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조기퇴직수당 및 특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 2022.08.24., 2023.04.07.)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1.)
②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일반직원(일반직,기술직)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11.1., 2020.3.27., 2022.08.24.)
③ 특별퇴직수당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신설 2022.08.24.)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법인 소속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 2023.04.07.)
② 삭제 <2008.11.1.>
③ 삭제 <2008.11.1.>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04.07.)
1. 징계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에서 이동 (2023.04.07.)]
[본조 제목 개정 2023.04.07.]

제3조의2(기간의 계산) ① 제3조의 근속기간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속기간은 대학교 및 법인 소속기관의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명예퇴직 예정인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2.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공상휴직 및 육아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정년퇴직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명예퇴직일의 다음달 1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08.11.1.]

제3조의3(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①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 2012.12.1., 2020.6.26., 2023.04.07.)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일	
	교원	직원
3. 1. ~ 3. 10.	8월말	6월말, 8월말
6. 1. ~ 6. 10.	2월말	12월말, 2월말

1. 삭제 <2023.04.07.>
2. 삭제 <2023.04.07.>
3. 삭제 <2012.12.1.>
4. 삭제 <2012.12.1.>
5. 삭제 <2012.12.1.>
6. 삭제 <2012.12.1.>

② 삭제 <2015.3.1.>

③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개정 2023.04.07.)
[제10조제2항에서 이동 (2023.04.07.)]
[본조 제목 개정 2023.04.07.]

제3조의4(수시명예퇴직) 삭제 <2012.12.1.>

제4조 삭제 <2023.04.07.>
[종전 제4조제1항은 제3조제4항으로 이동(2023.04.07.)]
[종전 제4조제2항은 제3조제1항으로 이동(2023.04.07.)]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1., 2023.04.07.)

② 삭제 <2008.11.1.>

③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0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0.3.27.>

⑤ 월봉급액은 퇴직월(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특별승진하는 자는 특별승진 직전월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호봉제 교직원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의 봉급표를 적용하고, 성과연동호봉제 교원은 전임교원성과연동호봉제운영규정 [별표1]의 기본봉급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1., 2015.3.1., 2020.3.27., 2023.04.07. **2025.11.1.**)

⑥ **삭제 <2025.11.1.>**

⑦ 삭제 <2020.3.27.>

⑧ 삭제 <2023.04.07.>

[본조 제목 개정 2023.04.07.]

제6조(공고) 총장은 명예퇴직 허가 예정인원과 신청기간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예퇴직 실시 신학년도 1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교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조기,특별) 퇴직원과 별지 제2호 서식 교직원 명예(조기,특별)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5.3.1., 2023.04.07.)

[제10조제1항에서 이동 (2023.04.07.)]

[본조 제목 개정 2023.04.07.]

제8조(명예퇴직심사위원회)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명예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07.)

②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5.3.1., 2023.04.07.)

①의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7.)

1. 공상 또는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교직원
2. 잔여 근무기간이 짧은 교직원
3. 상위직급 교직원
4. 장기근속 교직원

② 총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청하고, 이사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23.04.07.)

③ 이사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총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1., 2023.04.07.)

④ 명예퇴직수당 신청자가 별지 제2호 서식 교직원 명예(조기,특별)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04.07.)

[본조 제목 개정 2023.04.07.]

제10조(사직원제출 및 수당지급) 삭제 <2023.04.07.>

[종전 제10조제1항은 제7조로 이동(2023.04.07.)]

[종전 제10조제2항은 제3조의3제3항으로 이동(2023.04.07.)]

제11조(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 사망 시에는 민법 제1000조 상속인의 순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2조(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 명예퇴직자는 정년퇴직일까지 대학교 장학규정의 교직원장학 혜택 및 각종 학교행사초대 등에 대하여 재직 중인 교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08.11.1.)

제12조의2(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별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퇴직 후 5년이내)
2. 대학교 및 법인 소속기관의 정규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퇴직당시 정년잔여기간 경과 후 재임용시는 제외)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대상자에게는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환수대상자는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납부 지연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 및 법인 소속기관의 정규 교직원으로 재임용된 후 퇴직할 때에는, 재임용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대상 기간 보다 짧은 경우 별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며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8.11.1.]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법인 소속기관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1.1., 2023.04.07.)

[본조 제목 개정 2023.04.07.]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액) ① 삭제 <2023.04.07.>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은 별표 2 조기퇴직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한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은 해당 학년도 명예퇴직 시행 공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23.04.07.)

[본조 제목 개정 2023.04.07.]

제15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은 본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의 명예퇴직신청의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6조 삭제 <2008.11.1.>

제17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8.11.1.]

제4장 특별퇴직수당 <신설 2022.08.24.>

제18조(특별퇴직수당의 대상)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의 퇴직예정일은 매 학기말로 한다.
[본조 신설 2022.08.24.]

제19조(특별퇴직 시행에 관한 사항) 총장은 특별퇴직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퇴직수당, 지급대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08.24.]

제 20조(특별퇴직수당의 지급신청등) 특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은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의 명예퇴직신청의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2.08.24.]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2월 28일자 명예퇴직교직원에 한하여 제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1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표 금액의 50%를 증액 조정한다.

③ (명예퇴직 공지, 신청, 결정 등의 제반절차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2월 28일자 명예퇴직교직원에 한하여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기한은 학교장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 제반절차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자 명예(조기)퇴직교직원에 한하여 구. 교직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5조 제7항과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내에 시행하는 명예퇴직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제4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3.1., 2023.04.07.)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기준표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 퇴직당시 특별승진하는 자는 특별승진 직전을 적용한다. - 월봉급액의 68%×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8%×(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 2] 삭제 <2020.3.27.>

[별표 2] (개정 2012.3.20.)

조기퇴직 수당지급 기준표

근속기간	산 정 기 준
10년 이상 ~ 20년 미만	○ 매월 지급되는 봉급의 12개월 분을 지급한다. ※ 다만, 2012년 3월 20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조기퇴직을 하고자 하는(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적용)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별표1> 및 제5조 제4항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3] (신설 2008.11.1.)

환수금 및 정산금 기준표

구분	적용대상(제12조의 2)	산 정 기 준
환수금	제1항 제1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제1항 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제1항 제3호 해당자	1.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제12조의 2 제3항 해당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 “퇴직당시 월봉급액×지급율”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8.11.1., 2015.3.1., 2022.08.24., 2023.04.07.)

(명예·조기·특별) 퇴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성별 :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명예·[　]조기·[　]특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시 대상기관의 연혁 및 성격, 재취업 대상직위의 직무내용, 재취업 시기 등 명시

○ 퇴직 희망일 :　　년　　월　　일

○ 퇴직 신청일 :　　년　　월　　일

위　원인　　(인)

(학)과 장　　(인)

부 서 장　　(인)

동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11.1., 2015.3.1., 2022.08.24., 2023.04.07.)

교직원 (명예・조기・특별)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교직원구분	□ 교원 □ 직원
직 급		현 호 봉	
성 명		성 별	□ 남자 □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2. 명예(조기)퇴직 신청내역

정규 교(직)원 임용일	년 월 일	최초임용직급	
근속기간(징계등제외)	년 월	징계/직위해제/휴직기간	~ (월)
정년퇴직 예정일	년 월 일	명예(조기)퇴직(희망)일	년 월 일
비위/형벌관련사항	□ 있음 □ 없음	비위/형벌내용	
※정년잔여기간(지급대상기간)	년 월(년 월)	산 출 내 역	

3. 확 인 자

※ 확 인	담당자 직명: (교원인사담당/직원인사담당)	성 명: (인)
	확인자 직명: (교원인사팀장/직원인사팀장)	성 명: (인)

(※표시란은 신청인 기재하지 말 것)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직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하여 ([ ]명예・[ ]조기・[ ]특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명예・조기・특별) 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인)

동명대학교 총장 귀하